

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									
①과세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상 호		③성 명				
			②사업자등록번호						
❶ 퇴직급여충당금 조정									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	④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(②의 계)								
	⑤설 정 률					5/100			
	⑥한 도 액(④×⑤)								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7조제2항에 따른 한도액	⑦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								
	⑧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								
	⑨연도 중 충당금 환입액								
	⑩충당금 부인누계액								
	⑪연도 중 퇴직금 지급액								
	⑫차감액(⑦－⑧－⑨－⑩－⑪)								
	⑬누적한도액[②×일정비율＋퇴직금전환금]								
	⑭한 도 액(⑬－⑫)								
한 도 초 과 액 계 산	⑮한 도 액(⑥과 ⑭ 중 작은 금액)								
	⑯필요경비 계상액								
	⑰한도초과액(⑯－⑮)								
❷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									
구 분 계 정 명	⑱총급여액 (⑲＋⑳)		⑲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		⑳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		㉑기말 현재 전종업원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		
	인원	금액	인원	금 액	인원	금 액	인원	금 액	
계									

작성 방법

1. ④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: ②란의 계의 금액을 적고, ⑫차감액란은 전기 말 본인 계상 장부상총당금 기초 잔액에서 기중 총당금 환입액 또는 총당금부인누계액(기중 환입분을 제외합니다)과 기중 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, 그 잔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()안에 “0”으로 적습니다.
2. ⑧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총당금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“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”을 적습니다.
3. ⑩총당금 부인누계액란: ⑦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(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 관련 부인액 제외)을 적습니다.
4. ⑬누적한도액란: ②란의 금액에 일정비율*를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하여 계산하며,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.

* 일정비율

과세기간	비율	과세기간	비율
2010.1.1~12.31	100분의 30	2011.1.1~12.31	100분의 25
2012.1.1~12.31	100분의 20	2013.1.1~12.31	100분의 15
2014.1.1~12.31	100분의 10	2015.1.1~12.31	100분의 5
2016.1.1 이후~	100분의 0		

5. ⑰한도초과액란 :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⑫차감액란의 미달액(△)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.
6. ⑱총급여액란 : 계정명별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되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,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⑰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 및 ⑳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에 각각 적습니다.